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의안 번호	15-58
----------	-------

제출년월일 : 2015년 8월 일
제 출 자 : 마포구청장

1. 제안이유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장기적 경기침체의 대안경제로 부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추진과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교류확산을 통해 주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참여에 대한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나. 구성기관 : 37개 기초자치단체

다. 구성형태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회장 1, 수석부회장 1,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 권한 : 안건 토의 및 표결권
- 분과위원회 : 사회적·마을기업분과, 자활기업분과, 협동조합분과
- 실무협의회 :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 실무협의회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지방자치법」 제152조 ~ 제165조
-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 ~ 제102조

나. 협의회 규약 : 별첨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설명자료

□ 협의회 구성 · 참여 배경

- 1997년 IMF 경제위기 시에 유럽의 사회적기업을 사회적일자리라는 이름으로 최초 도입한 이래 2000년 자활공동체, 2007년 사회적 기업, 2010년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이 순차적으로 등장 한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는 1,350여개의 (예비)사회적기업, 1,249개의 마을기업, 7,208개의 협동조합이 활동하고 있음(2014.12월말)
- 사회적경제 주체인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은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서 사업성, 시민성, 지역성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으나, 도입당시 중앙정부는 일자리창출 차원에서만 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지원 종료 후에는 폐업, 일반기업으로 전환 등의 병폐가 발생하였음
-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정부정책이 사회적경제 사업체의 지역 사회 기반을 중시하고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사회의 요구 증대와 사회적경제에 대한 주민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 협의회」 구성하여 2013.3.20 창립하였으며 우리구도 금년도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현장에서 지방정부의 경험과 노하우를 교류하고 법령제정 및 제도개선에 대해 공동 건의하는 등 상호연대를 통해 마포구 사회적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구성 개요

- 협의회명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구성기관 : 37개 기초자치단체
- 구성형태 : 협의회, 실무협의회, 분과위원회
 -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 인적구성 : 회장 1, 수석부회장 1, 사무총장, 복수의 부회장

- 분과위원회 : 사회적·마을기업분과, 자활기업분과, 협동조합분과
 - 실무협의회 : 중앙실무협의회, 권역별 실무협의회
- 주요 협의사항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 협의
 -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협의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사항 협의 등

□ 추진경과

- '12. 08. 31 : 협의회 설립 8개 자치단체 공동제안
※ 완주군, 금천구, 성북구, 노원구, 도봉구, 시흥시, 인천남구, 인천남동구
- '12. 09. 04 : 협의회 설립 제안(성북구→ 전국 기초자치단체)
- '12. 10. 18 : 참여 기초자치단체 확정 (30개 지자체)
※ 서울·인천·경기 17개, 강원권 1개, 충청권 4개, 호남권 5개, 경상권 3개
- '12. 11. 09 : 협의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장 준비모임
 - 규약안 의견수렴 및 확정
 - 임원 구성안 및 향후 협의회 운영 방안 등 논의
- '13. 3. 20 : 창립총회 및 출범식
- '14.10. 17 : 2기 출범식
- 협의회 추진실적

1기 추진실적	2기 추진실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례신문사·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 개최(5회) -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7회) - 협의회 정기총회 (2013. 3월, 8월) -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 (17회) - 전국 사회적경제 메니페스토 실천협의회 - 사회적경제 선진지 벤치마킹(화성시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겨례신문사·지방정부협의회 공동포럼 개최(1회) - 지방정부협의회 임원회의 개최(3회) - 협의회 정기총회(2014. 10월, 2015. 1월, 7월) - 사회적경제 관련 포럼, 토론회, 워크숍 등 개최(11회) - 제5회 아시아미래포럼 참석 - 캐나다 사회적경제 해외연수 - 2014 GSEP 지방정부협의회 특별세션 개최

□ 향후계획

- '15. 9월 : 협의회 참여 시·구 지역의회 의결 및 고시
※ 협의회 구성 후 10일 이내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

제1조(목적) 지방자치의 실시에 따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사회적경제 분야 협의기구로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사회적경제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2개 이상의 시·군·구(이하 “지방자치단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 간의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사회적경제에 관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에 건의 또는 요청하는 사항
7.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 협의회는 “별표”의 지방자치단체로 구성하며, 위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된다.

제4조(임원) ① 협의회는 모임을 대표하는 회장 1명, 수석부회장 1명, 부회장과 협의회 제반 업무를 처리하는 사무총장을 둔다.

② 회장은 위원총회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모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수석부회장, 부회장과 사무총장을 선임한다.

2. 회장은 권역별 위원 수를 감안하여 복수의 부회장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부단체장이 대리 참석할 수 있으며,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회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며, 협의회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 ① 회장은 회의개최 20일 전까지 지방자치단체 사회적경제 관련기관 및 각 위원에게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제출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회의개최 10일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의견을 받거나 협의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의 배부) 협의회는 부의할 안건을 회의개최 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회의 당일 배부할 수 있다.

제9조(의견의 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결과에 대한 조치) ① 협의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회장은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 결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차기 협의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분과위원회의 설치) ① 협의회는 효율적인 운영과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사회적·마을기업 분과위원회

2. 자활기업 분과위원회

3.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포함)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과 15명 이내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선정하고 분과위원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⑤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분과위원회는 해당 기관·단체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을 추천하여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⑥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협의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2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협의사항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1.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2. 지방의회 의원

3. 관련 공공단체장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사람

4.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

③ 자문위원은 협의회 및 제13조에 따른 실무협의회 회의 시 참석할 수 있으며, 협의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등) ①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와 서기는 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 업무담당 실·단·과·소장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실무적인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③ 실무협의회는 중앙 실무협의회와 권역별 실무협의회를 두되, 중앙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해당권역 지방자치단체 소속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고, 권역별 실무협의회는 권역별 부회장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담당 실·단·과·소장이 주관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실무협의회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

⑤ 중앙 실무협의회는 협의안건의 실무검토 의견서를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개최 시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부담) 협의회 공동사무의 처리, 공동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경비는 참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제16조(회계보고 및 결산)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협의회의 회계는 사무총장이 관장하고, 매년 1회 정기회의에서 경비집행 상황을 보고하고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규약 개정) 이 규약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운영세칙) 이 규약에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창립총회일 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지방자치단체

지 역	지 방 자 치 단 체 명	비 고
서 울	관악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양천구, 강서구, 금천구, 동작구, 강동구	12
인 천	남구, 남동구, 부평구	3
광 주	남구, 서 구, 광산구	3
대 전	서구, 유성구	2
경 기	수원시, 성남시, 부천시, 광명시, 오산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8
강 원	속초시	1
충 남	아산시, 논산시, 당진시	3
전 북	전주시, 완주군	2
전 남	여수시, 담양군, 해남군	3

관 계 법령

□ 지방자치법〔시행 2012.9.22〕〔법률 제11399호, 2012.3.21 일부개정〕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도가 구성원이면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2.29>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제3절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59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 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규약을 정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제160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조직)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에는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둔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과 지방자치단체조합장 및 사무직원은 지방자치단체조합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③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5조제1항과 제9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을 겸할 수 있다.

제161조(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와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의 권한) ①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중요 사무를 심의·의결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제139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조합장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표하며 지방자치단체조합

제162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조합의 명칭
2.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사무소의 위치
4.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사무
5. 지방자치단체조합회의 조직과 위원의 선임방법
6. 집행기관의 조직과 선임방법
7.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과 지출방법
8.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제163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지도·감독) ① 시·도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시·군 및 자치구가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은 1차로 시·도지사의, 2차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구성원인 시·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공익상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립이나 해산 또는 규약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4조(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변경 및 해산)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제159조제1항을 준용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해산한 경우에 그 재산의 처분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에 따른다.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제165조(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고, 공동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도지사
2. 시·도의회의 의장
3.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4. 시·군·자치구의회의 의장

② 제1항 각 호의 전국적 협의체가 모두 참가하는 지방자치단체 연합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를 설립한 때에는 그 협의체의 대표자는 자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 등에 관한 의견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장관은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7.14>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타당성을 검토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통보받은 검토 결과를 해당 협의체나 연합체에 자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하면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1.7.14>

⑥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는 지방자치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1.7.14>

⑦ 제1항에 따른 협의체나 제2항에 따른 연합체의 설립신고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

□ 지방자치법 시행령[시행 2013.1.1] [대통령령 제23900호, 2012.6.29 일부개정]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 기준) ① 법 제152조에 따른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광역계획 및 그 집행, 특수행정수요의 충족, 공공시설의 공동 설치, 행정정보의 교환, 행정·재정업무의 조정 등의 필요를 고려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에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협의회 중 수도권 행정협의회와 대도시권 행정협의회는 수도권과 대도시권 행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관련 시·도로 구성한다.

제96조(협의회 사무소의 위치) 협의회 사무소는 공동으로 처리할 사무의 비중이 보다 큰 지방자치단체(이하 "중심지방자치단체"라 한다)에 둔다.

제97조(협의회 구성 보고) 중심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2조제1항에 따라 협의회를 구성하면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가입한 지방자치단체명
3. 구성목적
4. 구성일자
5. 협의회의 규약 사본

제98조(회장) 법 제153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회장은 1명으로 하되,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의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선임한다.

제99조(회의) ① 협의회는 정기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한다.

② 정기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구할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협의회에 대하여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회장은 회의가 있을 때마다 협의회의 안건을 준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미리 배포하여야 한다.

⑤ 협의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회장은 협의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시·도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행정안

전부장관에게, 시·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협의회 개최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00조(자문위원) ① 협의회는 그 협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은 국가의 특별행정기관의 장, 지방의회 의원, 관련 공공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승인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제101조(운영 규정) 법 및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02조(협의체의 설립 신고 등) ① 법 제16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이 전국적 협의체를 설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1. 설립취지
2. 협의체의 명칭
3. 협의체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창립총회의 회의록
5. 대표자·임원 및 회원의 성명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08.2.29>